

제17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013. 03. 21 (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482	(1)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1483	(2)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84	(3)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1485	(4)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1486	(5)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2013.03.11	2013.03.11	2013.03.19	2013.03.19	최근 배의원
(2)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3.11	2013.03.11	2013.03.19	2013.03.19	총무과장
(3)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2013.03.11	2013.03.11	2013.03.19	2013.03.19	김기자의원
(4)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2013.03.11	2013.03.11	2013.03.19	2013.03.19	김기자의원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3.11	2013.03.11	2013.03.19	2013.03.19	기획감사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경비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3조)
-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8조)

(2)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 기준액 제한 범위 상향 조정(안 제2조제1항)
 - 3퍼센트 → 5퍼센트
- 보조 기준액 미포함 조항 삭제(안 제2조제3항)
 -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은 보조 기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보조사업 범위 정비(안 제3조제1호→ 제4호 가목, 나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시설의 사용료와 돌 미로원의 입장료 징수를 통해 품격 있는 공원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3조)
- 충주시 세계무술공원의 사용허가, 허가조건, 허가제한 명시
(안 제4조 ~ 안 제6조)
-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내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 감면과 사용료 환불
(안 제8조 ~ 안 제11조)

(4)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무술에 대한 연구 및 보존·전승을 위해,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관리, 관람시간, 휴관일 명시
(안 제2조 ~ 안 제5조)
-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자료의 취득, 구입, 수증, 기탁 명시
(안 제9조 ~ 안 제12조)
-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내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 감면 명시
(안 제20조 ~ 제21조)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부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 방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 업무 기능이 쇠퇴한 통신기증직을 감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 1,291명(변동 없음)
 - 일반직 : 1,059명 → 1,065명(전환인력 5, 지적재조사 시설 1)
 - 기능직 : 185명 → 179명(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 △5, 기능통신 △1)
 - 그밖에 : 47명(현행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경비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와 관련 현재 도내 시·군은 보은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고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등에 보조를 하고 있음.

-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시세수입액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보조 기준액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 교육경비의 보조 기준액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은 당초예산 시세수입액 811억원을 기준으로 24억에서 40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하게 되나
-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보조 기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급식 경비를 제외한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비용을 보조 기준액에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1.2%(10억원)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경비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시 세 수입액	지원기준액		교육경비		교육복지투자 포함		전 체 (급식비포함)	
		기준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2007	52,524	1,050	2	782	1.5	1,182	2.3	1,482	2.8
2008	61,055	1,221	2	1,602	2.6	2,502	4.1	2,862	4.7
2009	63,538	1,270	2	2,119	3.3	3,150	5.0	3,678	5.8
2010	67,388	1,347	2	2,439	3.6	3,389	5.0	3,997	5.9
2011	70,787	2,123	3	1,979	2.8	2,655	3.8	7,542	10.7
2012	74,000	2,220	3	2,202	3.0	2,918	3.9	8,841	11.9

- 도내 타 시·군의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보은군, 옥천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5퍼센트에서 7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도내 타 시·군 교육경비 지원 비율

시군	보조기준액	시군	보조기준액
청주시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	영동군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
충주시	시세수입액의 3% 범위 내	증평군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
제천시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	진천군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
청원군	시세수입액의 6% 범위 내	괴산군	시세수입액의 7% 범위 내
보은군	예산범위 내	음성군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
옥천군	예산범위 내	단양군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

- 검토결과 우리시의 경우 시세수입액 대비 지원율이 3퍼센트로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으로 도내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고 학교교육 여건과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3)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 세계무술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무술공원 내 야외공연장, 야영장, 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할 경우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돌 미로원 입장시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술공원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 세계무술공원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품격 있는 공원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이 제2종 전문박물관으로 2012년 12월 20일 등록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박물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박물관 시설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사무분야 기능적 개편 방침에 따라 2012년도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34명 중에서 미전환자 5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으로 기능이 쇠퇴한 통신분야 기능직 인력의 퇴직에 따라 기능직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직의 정원으로 1명을 대체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증감 없이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질의: 없음

(2)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의원이 지원하는 시설투자비도 기존 3%에 포함되었는가?

○ 답변: 포함되었음.

▶ 질의: 증액되는 예산은 인재육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 답변: 영어캠프 등에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검토 하도록 하겠음.

(3)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 질의: 돌미로원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력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답변: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할 계획임.

▶ 질의: 충주시민을 30%로 감면한 이유는?

○ 답변: 입장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30%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책정하게 됨.

▶ 질의: 돌 미로원에 대한 준비사항은?

○ 답변: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대문 및 요금소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미로원 내 모든 보강시설물은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음.

▶ 질의: 1일 입장객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는가?

○ 답변: 1일 입장객은 200 ~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음.

(4)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 질의: 없음.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없음.

5. 심사결과

- (1)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2)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4)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